

# 지급보증거래 이용약관 (보증처용)

##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은행, 보증신청인(이하 "신청인"), 지급보증의 상대처(이하 "보증처") 사이의 지급보증거래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 "은행"이란 신청인과 지급보증 약정을 하고 지급보증서를 발급하는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 "지급보증"이란 신청인이 보증처에게 현재 부담하고 있거나 장래에 부담하게 될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은행이 그 지급을 보증하는 형태의 여신을 말합니다.

## 제3조 (보증금액)

지급보증서의 보증한도액은 원금, 이자, 지연배상금을 포함한 금액이며 은행은 보증한도액 초과분에 대하여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또한 특정 채무보증의 경우 분할상환조건에 따라 상환된 금액은 보증한도액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 제4조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보증처는 이행청구사유가 발생한 경우 은행에 보증기간내에 발생하는 피보증채무에 대하여 보증한도액 범위내에서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보증서에 별도의 청구기일이 표시된 경우, 보증처는 청구기일에 따라 이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위하여 보증처는 지급보증서 원본, 이행청구 관련 증빙서류, 설명확인을 위한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증채무 이행청구 대상 채무는 청구당시 실제로 존재하는 피보증채무에 국한되며, 보증처의 고의 또는 과실로 청구금액, 청구시기, 기타 제반 사항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하여 은행이 조기지급 또는 과다지급을 한 경우 보증처는 은행에 조기 지급한 금액 전액 또는 과다 지급한 차액 및 해당금액에 대하여 은행 연체이자율로 산정한 손해배상금을 은행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제5조 (보증채무의 소멸)

은행의 보증채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소멸됩니다.

- 보증채무 이행청구기간 내에 보증처로부터 보증채무의 이행청구가 없을 때
- 피보증채무가 소멸된 때

## 제6조 (지급보증의 조건변경)

보증채무의 이행 청구기간을 연장하거나 종료 또는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은행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의 조건 변경은 효력이 없습니다.

## 제7조 (지급보증의 해지)

지급보증을 해지하기 위해서 신청인은 지급보증서 원본을 회수하여 은행에 제출하여야 하나, 보증기간(별도의 청구기일이 표시된 경우 청구기일) 경과 후에는 지급보증서 원본이 반환되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은행의 보증채무는 소멸하는 것으로 합니다. 보증기한 만료 전 지급보증 해지를 원할 경우 은행은 잔여기간에 대해 보증료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 제8조 (양도 및 질권설정)

은행이 발급한 지급보증서는 보증처가 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채권으로써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지급보증서 원본을 양도하거나 질권 설정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 제9조 (분실, 도난 또는 멸실)

지급보증서의 원본을 분실하거나 도난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일어나는 어떠한 사고에 대하여서도 은행은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은행의 고의 혹은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제10조 (언어)

본 약관에 대하여 국문본과 영문본이 작성될 수 있고, 국문본과 영문본 사이의 불일치가 있을 경우 국문본이 우선합니다.

## 제11조 (약관적용 및 교부)

- 은행과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을 적용합니다.
- 은행은 신청인에게 지급보증거래 약정시 지급보증거래 이용약관을 교부합니다.

지급보증거래 이용약관을 기재한 지급보증서 원본을 보증처가 접수한 때 은행은 보증처에 약관을 교부한 것으로 합니다.

여신038-02 (2023.11.14)